

# 11. 土地去來契約申告區域指定

建設交通部 公告 第1997-38號 1997. 2. 18

## 1. 대상지역

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지역중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.

시·도	대 상 지 역
강 원 도	영월군 영월읍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철원군 김화읍·갈말읍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
충 청 북 도	음성군 음성읍·금왕읍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
충 청 남 도	부여군 부여읍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
전 라 남 도	영광군 백수읍·홍농읍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
경 상 북 도	봉화군 봉화읍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

2. 지정기간 : 1997년 2월 19일 ~ 1999년 11월 23일

## 3. 신고를 하여야 할 면적

지 역	면 적
도시계획구역 안	주거지역, 상업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330㎡ 이상 공업지역 10,000㎡ 이상 녹지지역 660㎡ 이상
도시계획구역 밖	농지 5,000㎡ 이상 임야 및 초지 10,000㎡ 이상 기타 1,000㎡ 이상